

강원관광대학 발전연구기획단 규정

제 1 조 (목적) 대학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학발전에 따른 제반사항을 연구, 기획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대학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강원관광대학 발전연구기획단(이하 “연구기획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 2 조 (기능) 연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

1. 대학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
2. 장·중·단기 발전계획 관한 사항
3.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
4. 학사 및 행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5. 산·관·학 협력체제에 관한 사항
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3 조 (구성) ① 연구기획단은 교수 2인과 직원 2인으로 구성한다.

② 단장은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기획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(개정2010.6.3)

제 4 조 (자료요청) 연구기획단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대학의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지원) ① 대학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, 비품 및 필요한 사항을 제공한다.

② 연구기획단에 참가한 교수는 강의 시간수를 처장 보직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다.

③ 연구기획단 참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6 조 (기타) 이 연구기획단은 제2조 기능의 수행여부에 따라 존폐를 결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